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행정사무 위탁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“중요내용”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제6호).

나.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
(안 제4조의3제1항)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